



#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!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



**금연구역 확대!**  
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,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,  
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의  
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.



##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공중이용시설

- 공공기관 청사, 지방공기업의 청사
- 학교, 유치원, 의료기관, 어린이집
- **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·청소년 이용시설**
- **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**
- **학교교과교습학원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**
- 교통관련 시설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
- 공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공장 및 복합건축물
- 공연장, 대규모점포, 관광숙박업소, 목욕장, 사회복지시설
-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- PC방 (13. 6. 8 전면 금연 시행)
-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 
(2013년 150㎡이상, 2014년 100㎡이상, 2015년 전체 확대)
- 만화대여업소, 도서관
- **과태료**  
 -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 : 500만원 이하  
 - 흡연자 : 10만원



## 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

- 도시공원 85개소  
(근린공원, 어린이공원, 체육공원, 소공원)
- 승강대 설치 버스정류소 311개소
- **과태료**  
 - 흡연자 : 5만원



## 간접흡연, 피해는 똑같습니다.

- 비흡연자가 실내공간에서 담배연기를 2시간 이상 마셨을때, 담배 네 개비를 피운 것과 같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.
- 담배가 타며 생긴 연기 속에는 필터를 통과한 것보다 21배 이상의 니코틴, 20배 이상의 벤조피렌, 50배이상의 포름알데히드, 170배 이상의 암모니아가 들어 있습니다.
- 레스토랑, 바 등에 일하는 사람은 직업성 폐암 발생 확률이 최소 50% 증가 합니다.